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9일

나. 제출자 : 신홍식 의원외 9인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2. 12. 1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신홍식 의원 )

### 가. 제안이유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이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안 제23조까지)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개정조례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2년 7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동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4조부터 안 제23조까지에는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하고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통합하여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체제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홍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
----------	-----

발의연월일 : 2012년 11월 9 일

발 의 자 : 신홍식의원 외 9 명

## 1. 제안이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이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나.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4조부터 안 제23조까지)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  
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상생협력을 통”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건설산업기본  
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  
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를 “명칭에 상관없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련”을 “관계”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2장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을 삽  
입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신고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자는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감사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접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접수

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

제16조(포상금지급 요건 및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불법하도급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

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회 또는 4백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8조(사실 확인 및조치) ①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사감독부서에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위법 여부 판단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③ 신고한 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려한다.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구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④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및 포상금 신청안내를 신고자와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제19조(포상금 지급제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포상금 지급 및 심의) 포상금 지급은 제5조제1항의 지급기준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지급하되, 지급 기준만으로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 등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관급공사 품질향상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를 금지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포상금의 환수) ①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u>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영등포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u>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u></li> </ol>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u></p> <p>제1조(목적) ----- ----- -----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명칭에 상관없이 -----</li> </ol>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 5. (생략)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  
-----  
-----.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  
-----  
-- 관계 -----  
-----.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14조(신고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자는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감사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접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신 설>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접수

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

제16조(포상금지급 요건 및 지급 신청) ① 포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불법하도급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신 설>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회 또는 4백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 설>

제18조(사실 확인 및조치) ①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사감독부서에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확

인, 조사를 실시한다.

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위법 여부 판단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③ 신고한 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려한다.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구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④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및 포상금 신청안내를 신고자와 공사 발주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제19조(포상금 지급제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직

<신 설>

간접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제20조(포상금 지급 및 심의) 포상금 지급은 제5조제1항의 지급기준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지급하되, 지급 기준만으로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 등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관급공사 품질향상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 설>

제21조(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를 금지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신고자가

<신 설>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포상금의 환수) ①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